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3. 17(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2. 10.

나. 제안자 : 이재병, 정수영, 차준택, 허희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2. 10.

라. 상정일자 : 2014. 3. 17(제21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이재병 의원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화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학교 부족한 시설의 지역사회 시설 공동 이용, 학교부지에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화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재병 의원등 8명이 발의하여 2014년 2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검토내용은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는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학교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 시설을 공동 이용, 학교부지에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며,

- 안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는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하거나 학교복합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 안 제5조(포상 등)는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임.

○ 검토의견

-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임.
- 다만,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생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 학교시설의 개방 이용에 대한 사항, 복합시설의 설치등에 대하여는 「초·중등 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등 현행 법령과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금번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구재용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학교에서 특별히 변화되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학교 개방에 있어서 특별히 변화되는 내용은 없으나 학생 안전관리 부분 등에서 학교장이 느끼는 책임감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질의) 구재용 위원

학교장에 따라 학교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개선방안은

(답변)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도록 학교장 회의시에 협조 및 당부하고 있음.

(질의) 노현경 위원

학교시설물 개방시 시설물 파손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변상하게 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활동외의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 당사자간의 문제임

(질의) 배상만 위원

학교 시설 개방율과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의 사유는

(답변)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개방율은 83%정도 되며 학교시설물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학교 운동부의 사용이나 시설관리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허회숙, 노현경, 구재용 위원

나. 반대 : 권용오, 배상만 위원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야 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관계로 상호 협조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

8. 기타사항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평생 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란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인천광역시의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사업으로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생활체육시설·보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부지에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5조(포상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